

선원대피처(Citadel) 관련 국내외 동향 소개

김민지¹,연효흠¹,권택우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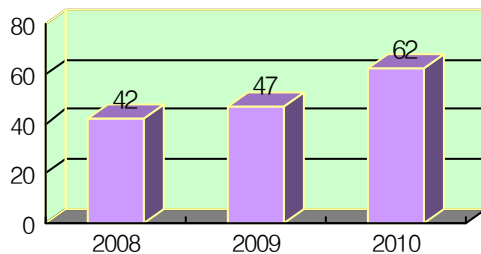
Introduction of Domestic and Foreign trends in the Citadel

Min-ji, Kim+, Hyo-Hum, Yeon¹ and Taek-woo, Kwon²

1. 서론

UN산하 해운산업 및 조선표준을 담당하는 국제해사기구(IMO) 및 한국정부에서는 소말리아 해적의 선박피랍이 아덴만에서 아라비아해 및 인도양까지 확대되고, 우리 선원·선박의 피랍이 계속됨에 따라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 왔다.

소말리아해역 선박피랍 현황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선사자구책의 일환으로 해적 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은 해적에게 납치될 경우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구출작전을 펼 수 있도록 선원대피처(Citadel)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최근 H선사의 B호 적용 사례로 해적에게 피랍 위기에 처했다가 극적으로 모면했던 사례를 통해 선원대피처 성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선원대피처 설치 적용 및 이행

해적피해 예방 대책으로 국제해사기구(IMO) 제87차 해사안전위원회(MSC, '10.5)에서 채택한 문서(Circ.1337)로 BMP(소말리아 인근해역에서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제3판, 부속서F. '선원대피처(Citadel) 운영지침'에서는 선원대피처를 권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해적피해 방지 대책 강화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해적피해예방 강화대책으로 아덴만 항정호송 확대, 선원대피처 설치 의무화 및 국제협력 강화로 적극 추진해 왔다. 이 중 2011년 1월 S선사의 A호 구출작전을 계기로 선원대피처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2011년 2월 중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설비기준(고시)에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선원대피처

를 의무화 하였다.

적용대상은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선박 중 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이며, 시행일은 2011년 3월 16일로 선원대피처의 구조, 기본설비 및 비품 및 위성통신설비 요건을 새로 규정했다. 선원대피처 설치 의무화 시행 이후, 2011년 4월 H선사의 B호(컨테이너선, 7,500톤)는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해적의 공격을 받았지만 선원 20여명 전원이 선원대피처로 대피하여 전원 피랍 위기를 모면하면서 선원대피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국토해양부는 아래와 같은 기본설비 및 추가설비를 설치하도록 관련기관 및 선사에 통보했다.

- 기본설비 : 철강재로 둘러싸인 구조로 출입문 일정두께 이상, 양방향 차단파대무선적화장치, 구난식량 및 음료수, 응급의료구, 간이화장실, 공기공급장치 등

- 추가설비 : 제2출입문 및 위성통신설비

H선사의 B호 적용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선원대피처의 중요성 및 피랍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에 따른 충분한 훈련으로 선원들에게 잘 숙지되었기에 해적에 대응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이다.

3. 결 과

IMO는 2011.2.21-2011.2.25기간 동안 개최된 FSI 19에서 최근 극심해지고 있는 해적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1년 세계해사의 날 주제를 'Piracy : orchestrating the response'로 설정하고 6개의 행동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UN차원에서 대응토록 촉구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세계 최초로 선원대피처 설치 의무화를 발 빠르게 추진했고 H선사 B호 해적 대응 결과를 IMO 회의(총회, 이사회, MSC 등)에서 관련 의제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국제적으로 해적피해 방지 대책으로 선원대피처 설치 강화 의견에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 감소에 중대한 요소로 기여할 것이다.

+ 김민지(한국선급, 정부대행업무팀/검사원),E-mail:kimmj@krs.co.kr, Tel: 042)869-9354, Fax : 042-862-6015

1 (사)한국선급

2 (사)한국선급